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10.

제출자 : 중구청장

의안 번호	97
----------	----

### 1. 제안이유

- 쓰레기 봉투 유료 광고문안을 전·후면에 게재 가능토록 하여 광고효과 유치 극대화

### 2. 법적근거 조항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1조

### 3. 주요내용

- 쓰레기 봉투 제작시 유료 광고문안을 봉투 후면에만 표시토록 한 것을 전·후면에 표시 가능토록 관련 조례 개정

### 4. 관계법령 발췌서 (사본) : 붙임

### 5. 개정 조례 “안” : 붙임

###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장을 하고 다음에 “,”를 삽입하고 “후면에는”을 삭제한다.

별표2의 쓰레기봉투의 사양중 “□ 광고문안(후면)”을 “□ 광고문안”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① (생략)</p> <p>②. 구청장이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을 하고 <u>후면에는</u> 유료 광고문안 을 표시할 수 있다.</p> <p>[별표 2] 쓰레기 봉투의 사양 <input type="checkbox"/> 광고문안 (후면)</p>	<p>제11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 -, (삭 제) - - - - - - - -.</p> <p>[별표 2] 쓰레기 봉투의 사양 <input type="checkbox"/> 광고문안</p>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제63호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로서 가정쓰레기와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쓰레기를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품명과 규격식별이 가능한 개별 폐기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수 없는 가구·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쓰레기"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고철류등으로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블럭등)·목재류·철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
6.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행지정없이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 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지역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에 의해 산출조정 검사된 예산범위안에서 구청장과 대행업체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방법에 따라 대행업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종량제 시행 및 수수료 부과·징수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가정용·봉투와 사업장봉투로 구분하며 가정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사업장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가정용은 흰색, 사업장용은 짙은 청색으로 한다.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이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방법) ①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봉투공급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사양 봉투크기

(단위 : cm)

용량	내용물규격 (접는 부분 포함 : 가로X세로)	묶는부분 (세로)
10ℓ	33 × 41.5	15(손잡이 있음)
20ℓ	42 × 50.5	19(손잡이 있음)
50ℓ	56 × 68.5	23(손잡이 없음)
100ℓ	71 × 86.5	27(손잡이 없음)

 문장(전면)

가로	
묶는부분	이 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세	- (울산광역시중구의문장) -
로	- (봉투용량) - - 용도 - - 주의사항 - - 울산광역시중구 - - 전화번호 -

~50ℓ, 100ℓ만 글씨표시

 광고문안(후면)

규격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공익광고)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7)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7. 10. 8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7. 10. 10.
- 라. 위원회 심사 : '97. 10. 18.

## 3.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쓰레기 봉투 유료광고 문안을 전·후면에 게재 가능토록 하며 광고효과를 높임으로써 주민에게 한층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쓰레기 봉투 제작시 유료광고 문안 봉투를 봉투 후면에만 표시하던 것을 전·후면에 표시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함.

### 다.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 4. 검토보고 요지

- 본 안은 동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중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에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 쓰레기 봉투의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면수를 확대하여 앞으로 유료광고를 적극 유치하여,
- 취약한 자치구 세외 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에 유료광고 문안 표시 면수를 전·후면 모두 표시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